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해외 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연말, 일부 제품의 EuP지침 개별 적용요건 윤곽

- 가전 및 사무기기등 7개 제품군 대상 별도 프로젝트 진행중 -



EU 에코디자인 지침(EuP, Energy-using Products Directive)의 올해 말 채택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유럽의회가 최종 검토중인 이 지침은 교통수단 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친환경설계를 요구하는 지침인데, 지침 제정작업 초기와는 달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해 왔다. 이 지침의 실질적 발효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uP는 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이어서 발효 즉시 제조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제품별 이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만일 제품별 이행기준이 EuP에 이어 순차적으로 마련된다면 EuP가 채택되더라도 별도의 EuP 이행지침이 제품별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계는 EuP의 실질적 발효까지는 3~4년의 여유가 있다고 예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예상과는 달리, 지침 이행을 위한 사전 기초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

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EuP에서 요구하는 에너지절약 기준 및 에코디자인 요건의 적합성 평가 방법의 표준화는 유럽 표준화기관인 CEN, CENELEC, ETSI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는 별도로 EuP의 제품별 이행 기준 설정을 위한 사전작업도 EU집행위가 전문기관에 프로젝트를 발주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컨설팅기관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VHK사는 이를 위해 7개 대상제품군(운수기기, 전기모터, 조명기기, 가전제품, 복사기 등 사무용품, 개인용 전자제품, 에어컨 디셔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VHK사는 현재 제품군별 대표제품을 중심으로 검토해 EuP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전제품 중 TV와 소비전자제품 중 PC에 대한 프로젝트는 각각 AEA T와 EPIC라는 기관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첫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한 IBM, 캐논, 지멘스 등 제품군별 기업들은 저마다 자사 제품을 기준으로 전과정평가(LCA) 결과를 설명하고 에너지 효율성과 향후 가능한 기술 발전 수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올 연말에 나올 결과보고서에서는 선진기업의 친환경 제품 기술을 반영한 기준 설정 방법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EU Commission, VHK 등]

VOL. 08
2005. 04. 04

헤드라인	1
◆ EuP지침안 최신동향	
해외동향	2
◆ 독일, EU회원국 최초 RoHS/MEEE 국내법 발효	
EU 배출권거래제 동향보고	3
◆ 브뤼셀과 마찰빛은 영국, 자존심으로 때문에 탈성한다	
◆ 환경에 대신 산업계 자율규제로 눈을 돌린 프랑스	
◆ 할당량 확보여부로 명암 엇갈리는 독일기업	
◆ 가장 먼저 국별등록부 운용 시작한 네덜란드	
◆ EU-ETS에 따른 첫 국제상장거래소 가동	
◆ 비즈니스 기회로 이용하는 일본	
◆ 비준거부한 호주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계획 발표	
◆ CECP, ETS가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사해야	
동향보고서	6
◆ EU가 말하는 '환경규제'를 점검하다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독일, 내년 3월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회수해야

- 회원국 최초 RoHS/WEEE 국내법 시행 -



독일이 EU 회원국중 가장 먼저 EU의 RoHS/WEEE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법을 발효했다. RoHS와 WEEE가 하나로 합쳐진 독일의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회수, 친환경 폐기에 관한 법률'(이하 'ElektroG')은 지난 2월 18일 연

방상원의원의 승인을 거치므로써 3월 정식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는 내년 3월 24일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는 이를 수거하고 제조업체는 재활용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ElektroG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6대 유해물질의 최대함량치를 카드뮴 0.01%, 수은, 납, 6가크롬, PBDEs, PBBs는 0.1%로 명시하였다. 다만 EU 지침에서 검토사항으로 규정된 범주 8의 의료기기와 범주9의 검사·제어기기, 그리고 예비품(spare parts)에 한하여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모든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시판전 등록을 해야 하며,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판하는 제품의 회수 및 처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재정정보증서를 주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독일 환경부]

Tip

ElektroG의 주요 내용 해설

□ 목적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 재생, 재사용의 촉진

□ 회수목표 : 2006년까지 개인별 연간 평균 4kg 이상

- 독일 정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정으로부터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최소 4kg 이상의 폐전기전자제품을 분리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한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독일정부는 2010년 3월 1일까지 제9조 분리수거, 제10조 제조자의 회수의무, 제11조 처리, 제12조 재생, 제13조 제조자의 정보 제공 및 보고의무조항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연방상원 및 하원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한물질

- 2006년 7월 1일 이후 시판되는 제품에 있어서, 균질물질당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s는 0.1%, 카드뮴은 0.01%이상 함유를 금하고 있다.

□ 회수 및 재활용 책임

- 소비자는 무료로 지자체의 수거소(집하장)에 폐전기전자제품을 배

출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2005년 11월부터 시판전에 반드시 폐전기전자기기관리기관(EAR)에 등록해야 하며, 회수 및 처리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다.

- 제조업자는 2006년 3월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전용수거함을 지자체에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제품별(5종)로 분류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장비 및 소비자전제품 전용수거함의 경우 TV 및 모니터의 브라운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해야 한다.
- 제조자는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판된 제품에 대해 2006년 3월부터 회수의무가 발생한다.

□ 의무등록제를 통해 무임승차 방지

- 제조자는 2005년 6월이전까지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지난해 8월 설립한 EAR이 이 기능을 담당한다. 각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EAR에 등록하는데,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시판을 할 수 없으며, 지자체로부터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하라는 EAR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AR에의 등록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작한다.

EU의 배출권거래제(ETS)가 실시된 지 3개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EU는 이미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세계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선도하고자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을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의 참여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23일 EU정상들은 2020년까지 15~30% 감축에 합의하였으며, 비록 이 날 정상회담에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10일 EU회원국 환경장관들은 2050년까지 60~80%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EU의 신목표 및 신계획의 발표는 EU환경장관의 말처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리더로서의 EU위상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현재 EU-ETS와 교토의정서체제 내에서 교토 이후를 향해 움직이는 선진국의 최근 동향을 확인해 본다. - 편집자 주



브뤼셀과 마찰빛은 영국, 자존심으로 달성한다



영국은 EU-ETS 시행에 앞서서 국내 배출권 거래(UK-ETS)를 도입하는 등 유럽에서도 CO₂ 저감대책에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2004년) 4월 30일 EU집행위에 CO₂ 배출허용량을 제출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1차이행기간에 7억 3,630만톤의 EU-ETS 국가할당계획(NAP)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후 영국정부는 석탄, 천연가스, 전력에 대한 정밀수요예측조사를 실시한 바, CO₂ 배출예상치가 약 5,610만톤 증가한 7억 9,240만톤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 배출허용량을 1,980만톤 증가시킨 7억 5,610만톤으로 수정요구하였으나, EU집행위는 당초 승인안으로부터 허용배출량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EU집행위가 이러한 수정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회원국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영국 스스로 보다 엄격한 저감계획을 통해 수용하거나, 교토메카니즘(배출권 거래, CDM/JI)을 통한 해결이 방안이 될 것이다. 영국의 NAP를 담당하는 영국 환경부(DEFRA)는 몇 년전까지 40~50여명에 해당하던 기후변화담당 직원을 110명까지 늘렸으며, 올해 EU 및 G8 의장국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중점 추진하기 위해 10~20여명 더 증원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은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이미 달성하고 있어서 2010년까지 CO₂를 기준년(1990년)대비 20% 감축하는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조사에서 1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재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무역산업부, 교통부, 재무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재조정할 방침이며 7~8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치계에서 영향력있는 싱크탱크로 알려진 노동당계열의 공공정책연구소(IPPR)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온난화 조사보고서 'Setting a Long Term Climate Objective'에 따르면, 영국은 기준년대비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90%의 CO₂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2010년까지 20%를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의한다면 2050년까지 60%를 감축하겠다는 영국정부의 현 계획은 재설정되어야 한다.

결국 영국의 NAP 수정안에 대한 논쟁에서 영국이 EU집행위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다면, G8와 EU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대책을 우선과제로 하고 싶어하는 영국으로서는 불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내 기업에 대한 압박과 배출권 거래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의 청정개발체제(CDM)이나 공동이행제도(JI)는 아직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UK Defra, IPPR 등)

환경세 대신 산업계 자율규제로 눈을 돌린 프랑스



프랑스는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수준의 약 10%를 상회하는 6억1,890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스팽 전총리 시절 책정한 기존 '국가기후변화 방지계획' (PNLCC)으로는 교토의정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 집권 이후 지난해 7월 새로운 지구온난화 대책인 'Plan Climat'을 발표했다. 'Plan Climat'은 이미 감소추세에 있는 공업부문 CO₂ 배출에 비해 운송 및 주택과 서비스업부문에서 90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전자가 22.7%, 후자가 14.3%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① 저공해차의 구입추진, ② 바이오연료의 이용확대, ③ 건물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④ 에너지절약 주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⑤ 공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이를 통해 2010년까지 7,230만톤의 CO₂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조스팽총리시절 PNLCC에서 기업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환경세(탄소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헌법평의회 '위헌' 결정으로 좌초되어, 'Plan Climat'에는 환경세 등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지 않은채 단지 자동차에 있어서만 '저연비차량에 대한 세제 우대혜택과 고연비차량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원칙선언에 그치고 있다.

산업계의 자발적 배출규제로 유도

산업계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은 자율규제로 맡기고 있다. 프랑스의 재계모임인 프랑경제인연합회(MEDEF)는 2002년 9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업연합회(AERES)를 설립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화학 등 에너지소비형 산업의 배출량 감축노력을 통합하기 시작한 결과 2003년에는 기준년대비 제조업 21.8%, 에너지산업 10.3% 감축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전력생산에 있어 원자력 발전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EU회원국에 비해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으로부터의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반면, 수송, 주택, 서비스산업시설, 농림업의 비중이 배출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수송과 건물로부터의 배출제한에 'Plan Climat'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있지만, 자동차세의 도입에 '유럽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프랑스에서만 도입할 수 없다'는 산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수송 및 주택에 대한 몫으로 남아 기업 대신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EU 집행위로부터 연간 배출할당량을 1억 5,651만톤으로 승인받은 것에 대해 프랑스 정부도 비교적 할당량을 많이 승인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2차 이행기간(2008~2012)의 배출량할당 협의에서 EU전체 차원의 할당량 축소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향후 대상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거래를 위한 제도마련 완료

지난 2월 26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3개 법령이 프랑스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로서 프랑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3개 법령은 2005년~2007년까지의 NAP를 승인하는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령 및 온실가스 배출할당에 관계되는 사업자의 리스트와 그 할당량에 관한 법령이다. 프랑스ETS 대상시설은 총 1,126개다. 이로서 프랑스는 배출권거래에 있어 필요한 법적 장치는 모두 완비하였다. 출처 : 프랑스환경부, Plantark 등

할당량 확보여부로 명암 엇갈리는 독일 기업



독일은 EU회원국 중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유럽 최대 배출국이다. 따라서 감축해야 할 목표도 기준년 대비 21%라는 가장 높은 기준

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동독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설비의 개선 등 에너지 절약대책이 큰 효과를 거둬으로써 이미 18.9%의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환경부는 산업계의 배출권거래 활성화와 배출권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문에서의 교통세 도입, 건물의 에너지절약규정의 강화 등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연방정부 홈페이지에서 밝힌 환경부 장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EU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기준년 대비 30%감축을 목표로 한다면, 독일은 40%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NAP에 따르면 EU-ETS의 제1차이행기간의 배출 목표는 연간 9억8,200만톤이며, 제2차이행기간에는 연간 9억 6,200만톤이다. 독일 정부는 EU-ETS의 대상이 되는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CO₂는 연간 5억 100만톤으로, 총배출량의 50%에 해당하며, 에너지 및 산업부문 총 배출량의 99%에 해당한다. 이번 1차 이행기간동안 이 시설에 할당된 배출목표는 연간 4억9,900만톤으로 연간 배출량의 99.6%에 달한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총2,350개로 과거의 배출량을 근거로 할당했는데(Grandfathering : 실적기준 무상분배), 할당공식에서 조기실시(Early Action)규칙이란 원칙을 사용했다. 조기실시규칙이란 199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사이에 일정규모의 배출 감축(8~14%)을 한 경우 할당계수 1을 부여하는 방식(원래 할당계수는 0.9755)으로,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조치를 조기 실시하여 기준 이상의 감축효과를 가져온 경우 그 감축분을 인정하여 더 많은 배출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1차 이행기간에 해당되지만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 온 기업에 있어서는 큰 부담이 없는 반면, 미이행기업에 있어서는 배출권거래에 의해 할당량을 구입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기업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출처 : BMU 등

가장 먼저 국별등록부 운용시작한 네덜란드



네덜란드 환경부는 CO₂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참여의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할당을 95% 완료했다. 또한 배출권거래 등록부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함에 따라 EU회원국 중 가장 빨리 배출권거래조건을 정비하였다. 네덜란드에서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은 금속, 제지, 화학, 식품업계의 기업 및 석유정제회사 등 205개사이며 이 중 195개사가 할당받았다. 한편 네덜란드는 6월부

터 산성화 및 스모그 대책의 일환으로 NOx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VROM]

EU-ETS에 따른 첫 국제상장거래소 가동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4개국이 참여하는 전력 거래소인 Nord Pool이 지난 2월 28일 EU-ETS상의 배출권 (EUA)를 취급하는 첫 거래소로 정식이동됐다. 노르웨이는 EU회원국은 아니나 협정에 의해 EU-ETS에 참여기로 함으로써 거래가 가능하다. 이 거래소는 EUA의 선물거래를 취급하며 현재 회원사는 21개이다. 첫날 증가는 2005년분 배출권에 대해 1톤당 9.55 유로였다. 이 배출권거래소는 2월 11일부터 실제 가동하였으며, 11일 거래개시부터 10일간의 거래량은 총35만톤으로 같은기간 유럽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7%를 차지했다. 현재 유럽 전체에서 1일 거래량은 20~100만톤정도로 대부분 브로커에 의한 직접거래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거래소가 취급하는 EUA란 EU가 정한 CO₂ 배출권의 단위로 이번에 상장한 것은 2005년 12월, 2006년 12월, 2007년 12월 결제하는 선물거래 3종이다.

한편 Nord Pool이 주식의 17.4%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EX)도 지난 3월 9일 현물거래소로서는 처음으로 개장하여 첫 날 CO₂ 1톤당 10.4유로를 기록했다.

Nord Pool과 EEX는 각각 EU-ETS에 따른 최초의 선물·현물거래소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비로소 배출권거래를 둘러싼 거래소간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ord Pool도 '최소 3개 이상의 거래소가 EU역내의 거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이 거래소 외에도 유럽내에서 선물거래소로는 네덜란드의 ECX, 현물거래소로는 프랑스의 PowerNext가 준비 중에 있다. [출처 : Nord Pool, EEX 등]

비즈니스 기회로 이용하는 일본



EU-ETS 시행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남다르다. 일종의 사업기회로 보고 있는 것. EU의 신회원국 및 동유럽국가가 감축목표에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JI 및 CDM사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국책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동구권 국가들의 잉여배출권(Hot Air) 확보를 목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배출권을 확보하여 ETS 2차 사업기간이자 교토 의정서상의 제1차 공약기간에 되파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선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를 대상으로 사업성을 타진중이다. 한편 JBIC와 일본기업들은 이미 2004년 12월 일본온실가스감축기금(JGRF*)의 운용을 시작한 바 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JI/CDM사업도 고려중이다. [출처 : JGRF 등]

* JGRF에 대해서는 본지 5호 참조

* JGRF는 3월 30일 루마니아 환경부와 JI업무협정을 체결했다.

비준거부한 호주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계획 발표



호주는 지난 3월 10일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성격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Greenhouse Challenge Plus을 발표했다. 기존계획을 개선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호주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전략의 하나로서, 온실가스배출의 감소와 에너지효율성의 제고, 기업정책결정과정에서 온실가스문제를 고려토록 하고 기업의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정례보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배출관리전략, 감축목표와 감축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 제품 및 서비스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량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데이터를 관리수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호주 환경부는 100개 기업 1천개 시설이 참여하고 있는 동 프로그램으로 2008~2012년동안 연간 15만톤이상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Greenhouse Office]

CEPS, ETS가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 조사해야



지난 2월 16일 유럽정책연구센터(CEPS)는 EU-ETS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재검토 논의에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향후 EU역외국가에 있는 경쟁상대도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O₂배출량이 적은 수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회사가 전력요금상승으로 인한 부당이득취득가능성과 전력가격의 감시체제 필요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

CEPS, EurActiv 등]

EU가 말하는 2005년 ‘환경규제’를 점검하다

- ‘EU환경규제 대응 현지시찰’ 보고서 중에서 -



환 정부, 전경련, 환경마크협회는 공동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기업 및 연구소 관계자 15명과 함께 ‘EU환경규제 대응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에서는 EU환경총국과의 환경정책 간담회, 영국 무역산업부 환경규제 정책간담회, EU시장동향 전문가 세미나 및 구주일본비즈니스협의회(JBCE),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BMW 재활용·분해센터(RDC) 방문 등을 통해 RoHS/WEEE, EuP, ELV 등 최근의 EU환경규제 논의동향과 현지 기업의 대응노력, 회원국의 이행시스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하는 종합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성과부분을 일부 발췌한 것.

EU집행위, RoHS/WEEE의 Guidance 작성중

- EU의 RoHS/WEEE 지침은 현재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원국의 재량여지가 있는 WEEE는 각 EU회원국이 폐제품 처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재량의 여지가 없는 RoHS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가와 이행여부의 평가 및 적합성 검증방법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현재까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을 정할 정보수집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 RoHS/WEEE의 국내법화(Transposition)과정은 2005년 3월 현재 RoHS가 18개국, WEEE가 17개국에서 국내이행법안을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EU에서는 회원국 이행법의 형식심사(Legal Check)를 실시 중에 있고, 이후 실질심사(Technical Check)를 시행할 예정이다.
- 영국은 지난해 7월말 RoHS/WEEE 규칙안과 함께 각각의 Guidance Note, RoHS 규칙에 의한 위해성평거나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계획을 공표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에 EU환경총국도 영국과 같이 Guidance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그 시기는 올해 7~8월 경이다. 현재 RoHS/WEEE의 기술적인 기준 등은 TAC



환 정부, 전경련, 환경마크협회는 공동으로 3월 7일부터 14일까지 기업 및 연구소 관계자 15명과 함께 ‘EU환경규제 대응 현지시찰’을 실시했다.

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영국이 발표한 Guidance Note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이를 참고하여 논의중이다.

‘RoHS의 예외 적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

- 기술적합위원회(TAC)는 RoHS/WEEE에 근거해 설치되어 기술적인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데, 현재 데이터 보고방법, WEEE마크의 사용방법, RoHS상의 금지물질 최대허용치(MCVs) 설정, 적용예외 리스트의 승인, 지침의 재검토 조항으로부터 생기는 조치 등 사안에 대한 해결 및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통일화 작업을 위임받아 논의중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사실상 두 지침에 있어 적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행하는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확인/조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사안은 대상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RoHS의 적용예외, 금지물질 최대허용치, 시판의 정의, 이행의 증명방법, WEEE재활용률 보고체계 등이다.
- 먼저 Deca-BDE에 대한 금지여부에 대한 검토에서 일부 국가간에 RoHS상에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과 금지물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맞선 가운데 별도 위해성평가를 했으나, 최종결정은 3월 16일 TAC회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난해 집행위가 판단착오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던 바, 유럽의회의 항의에 의해 잘못 발표한 것임을 시인하고 정정한 바 있어 최종 결정은 3월 TAC 회의 이후가 될 것이다. 특별한 결정이 없는 경우 일단 ‘2006년 7월 1일 이후 사용이 금지된다’는 결정 발표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법적인 불확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procedure), 즉 지금까지 제출된 적용면제 신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인정’ 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통한 의견접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
- 지난 2월 접수마감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서 중 삼성전자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EU담당자는 “예외조항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 “현재 TAC에서 계속 회의할 것이므로 계속 요구하



고 설득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 같은 의미에서 '유예기간(Grace period)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EU환경총국은 기술적으로 장기적인 사항인 경우 지속적인 접촉과 설득이 필요하고, 예외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2006년 7월 이후에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만 그 후에도 규제충족이 안 되는 경우 1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 반면 방문했던 JBCE의 관계자는 EU입법과정에서의 단계별 로비방법을 소개하면서 TAC 회원국 및 참석자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consultation 참여와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눈길을 끌었다.

* deca-BDE는 지난 3월 16일 TAC회의에서 금지물질로 확정했다.

이행의 증명은 영국이 주장하는 '자기선언 방식외에도 고려해야'

- RoHS지침상에는 이행(compliance)의 증명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품이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증명하는 방식은 어떤 단계에서 검사하는지, 어떤 분석방법으로 시험하는지와 어떤 기관의 결과만을 인정하는지 등에 따라 그 대응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중 하나이다.
- 이에 대해 영국 무역산업부(DTI) 지속가능개발국의 에코디자인·제품정책과장은 EU차원에서 동 지침의 이행증명방법을 몇가지 보여주었다. 그 중 첫 번째는 제조업자에 의한 '자기선언'(Self Certification)방식. 이 방식은 이미 EU의 New Approach에 따르는 여러 지침들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이를 통해 시판중인 제품이 RoHS 지침에 부합하고 있음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기선언의 증명방법의 한 축은 보고형식의 표준화이다.
- 또한 시험분석의 EU차원의 합의된 표준화와 회원국간 정보교환을 통해서도 지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U환경총국 관계자는 시험분석방법의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Guidance Document를 개발중이라고 말하고 오는 8월경 초안이 작성될 것이라고 했다.
- 영국 DTI 에코디자인·제품정책과장은 이행증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EU차원에서 전 회원국의 합의에 의한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무역역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합의에 이를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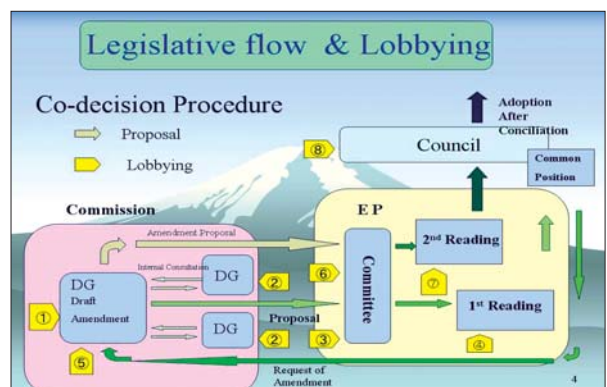
기선언' 방식이 기본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내비쳤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E'에 대한 논의중

- REACH는 화학물질의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에 대한 것이며, 현재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합의되어 '평가'에 대해서 논의중이며, '인증'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경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EU환경총국은 올 여름(8월경) REACH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결과가 나오면 EU환경총국은 시험방법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며, REACH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의회에 보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대EU 전방위로비의 중요성 일깨워

- 구주일본비즈니스협회(JBCE)의 성공사례발표에서는, RoHS/WEEE 채택과정에 있어서 Green Paper단계에서부터 최종 채택에 이르기까지 EU의 법제정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의견제시와 성명, 주요 회원국이나 유럽의회 의원, 보고서 작성전 연구자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일본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JBCE관계자는 RoHS/WEEE의 EU입법과정(Comitology) 과정에 있어 로비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필요하다면 이해관계가 같은 미국 등의 협회 또는 기관과 함께라도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할 것,
 - ② Proposal 단계에서 EU집행위와의 미팅을 통해 이해를 반영시킬 것,
 - ③ TAC에 참석하는 구성원에 대해 별도로 만나 충분히 설명을 통해 이해시킬 것,
 - ④ consultation 단계에서는 항상 입장 및 견해를 제시할 것,
 - ⑤ 그리고 향후를 대비해서라도 항상 MEP를 중요하게 대할 것



** 보다 상세한 내용은 4월 발간예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환경마크협회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 전 화 : 02-358-6800 (교환133)
 ◆ 팩 스 : 02-358-8561
 ◆ 이메일 : tomasyoon@kela.or.kr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상기 환경마크협회내 TEN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TEN의 온라인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 한달간 시험운용 및 정보입력작업을 거쳐 5월부터 정식으로 최신 해외무역·환경규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 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의 환경규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운영에는 환경마크협회·KOTRA·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5 친환경상품전시회

주최 : 환경마크협회·환경재단
 일시 : 2005.11. 8(화) ~ 12(토)
 장소 : 한국국제전시장(고양시)
 참가문의 : 02-358-6800(교환136)

Calendar

2005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①	7	8	9
10	11 ②	12	13 ③	14	15 ④	16
17	18	19 ⑤	20	21	22	23
24	25	26	27	28 ⑥	29	30

2005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⑦	4	5	6 ⑧	7
8	9 ⑨	10	11	12 ⑩⑪	13	14
15	16 ⑫⑬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관련 국제회의 정보

- ① 4.6~7 제6차 EPP&RCP Trade Show (미국 몬타리온)
- ② 4.11~22 WSSD공약 지속가능발전의 제1차정책회기 (미국 뉴욕)
- ③ 4.13~15 OECD 환경정책이사회 (프랑스 파리)
- ④ 4.15 EU-ETS상의 모니터 및 보고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 협의 (EU환경총국)
- ⑤ 4.19~20 제3차 브뤼셀 연례 기후변화 컨퍼런스 (벨기에 브뤼셀)
- ⑥ 4.28~30 3R 컨퍼런스 (일본 도쿄)
- ⑦ 5.3~4 EnviroExpo & Conference 2005 (미국 보스턴)
- ⑧ 5.6 항공기 기후변화영향 감소에 관한 공개 협의 (EU환경총국)
- ⑨ 5.9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에 관한 기본전략 인터넷협의 마감일 (EU환경총국)
- ⑩ 5.12 EU 실층제 지속가능사용에 관한 최종공개협의 마감일 (EU환경총국)
- ⑪ 5.12~13 환경책임지침 세미나 (벨기에 브뤼셀)
- ⑫ 5.16~18 Air Pollution 2005 (스페인 코르도바)
- ⑬ 5.16~27 유엔심포럼 제5차회기 (미국 뉴욕)

